

이사회 운영 규정

올릭스 주식회사

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올릭스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이사회(이하 "이사회"라 한다)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제 14 조가 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- ③ 이사회는 각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제 3 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그 사안에 대하여 그 집행의 중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이사회는 그 결의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 4 조 (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)

- ① 이사는 회사 및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 또는 전체 주주에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계산으로,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와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5 조 (구성)

-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3 인 이상 7 인 이내로 한다.
- ③ 이사회에는 상법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둔다.

제 6 조 (의장)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유고 또는 기타 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 33 조 제 2 항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이사회의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③ 의장은 이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.
- ④ 의장은 이사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⑤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의 발언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7 조 (감사의 출석)

-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이사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9 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10 조 (이사회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 회 개최한다. 다만, 부의사항이 없으면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11 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(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)이 소집한다.
-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거나, 감사의 소집청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12 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늦어도 그 48 시간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.
- ② 전항의 소집통지는 각 이사에겐 문서, 전자문서, 구두 또는 기타 가능한 통신수단으로써 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개최될 수 있다.

제 13 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는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 398 조(자기거래금지)에 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는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.
-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4 조 (부의안건)

- ① 이사회는 부의안건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.
- ② 이사회는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 1. 법령 및 정관상 결의사항
 2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- 가.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
 - 나. 보통결의 사항
 - 다. 특수 결의 사항
 - 라.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
 3.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
 - 가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 - 나. 공장, 사무소, 사업장 등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 - 다. 중요한 자산의 취득 처분 및 양수 양도 (최근 분기말 자기자본 10% 이상)
 - 라. 중요한 자산의 담보제공 (최근 분기말 자기자본 10% 이상)
 - 마. 중요한 계약의 체결 및 취소, 해제 해지 (최근 분기말 자기자본 10% 이상)
 - 바. 신규 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(최근 분기말 자기자본 10% 이상)
 - 사. 대규모 자산의 차입 (최근 분기말 자기자본 10% 이상)
 - 아. 금전대여, 담보, 보증 등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 (최근 분기말 자기자본 10% 이상)
 - 자. 회계 및 재무보고 체제의 감독
 - 차. 법령 및 윤리규정 준수의 감독

- 카.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제기 (최근 분기말 자기자본 5% 이상)
- 타.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
- 파. 기타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사항,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경영성과 및 경영에 관한 주요 집행상황
2. 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처리한 사항
3.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

제 15 조 (권한의 위임)

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6 조 (긴급집행)

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사전 집행하고 조속히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4 장 기타사항

제 17 조 (의사록)

-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의사록은 관리담당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부속실 등)

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.

제 19 조 (규정의 개폐)

-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-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법령,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에 대한 사후 보고로 이사회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6 년 10 월 7 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7 년 4 월 3 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18 년 10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0 년 9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 11. 22.>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4. 3. 28.>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4 년 3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.